

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4. 3. 31 규칙 제729호
일부개정 2021. 6. 30 규칙 제103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」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서지정)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산관리과(이하 “총괄부서”라 한다)로 한다. <개정 2021. 6. 30>

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 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, 「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」에 따른 사무분장부서(이하 “관리부서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신고방법) 「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신고인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
2. 손괴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와 위반행위 내용
3. 그 밖에 손괴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

제4조(처리절차) ①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한도)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

제6조(포상금 지급) ① 신고 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.

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6. 30 규칙 제103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회계과"를 "재산관리과"로 한다.

